

##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발의)

#### 1. 제안이유

- 국내외 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됨에 따라 실질적인 우리시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의 포괄적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내외 도시 간 원활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교류협력,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나. 의회동의·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4월 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blue6017@korea.kr

##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행정,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하고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의회동의)”를 “(의회동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매결연 등을”을 “자매결연 및 국외도시와의 우호교류를”로, “취소 하고자”를 “취소

하고자”로, “오산시의회”를 “사전에 오산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국내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교류협력</u>”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u>국내외 도시</u>”라 한다) 간 지역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교류협력</u>”은 지역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li> <li>2. “<u>자매결연</u>”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u>국내외 도시</u>”라 한다) 간 행정,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li> <li>3. “<u>우호교류</u>”란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하고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li> </ol>
<p>제5조(사전검토 등) ① <u>시장</u>은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p>	<p>제5조(사전검토 등) ① <u>오산시장</u> (이하 “<u>시장</u>”이라 한다)----</p>

거나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6조(의회동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제7조(협약의 체결) ① 오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교류협력 선정도시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회동의 등) ① -----  
----- 자매결연 및 국외도시와  
의 우호교류를 -----  
취소하고자 ----- 사전에 오  
산시의회-----.

② 시장은 국내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류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지역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류협력 도시의 선정) 교류협력 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사전검토 등)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회동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협약의 체결)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교류협력 선정도시와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먼저 서명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서면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④ 협약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행정·인적교류사업
2. 경제·문화·예술·스포츠·교육·복지 등 분야의 교류사업
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참여



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 소유 시설의 사용승인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가 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21. 7. 9 조례 제191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